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7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권영세·서일준·이인선

구자근 • 유영하 • 김상훈

인요한 · 김소희 · 주호영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 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6조의2(이행상황의 제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 2. 제8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사용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있다.
 - 1.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4에 따라 차별의 시 정을 요청한 노동조합
- 2. 사용자가 제8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상황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 85조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 정 안 제86조의2(이행상황의 제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 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확정 된 시정명령: 교섭대표노동조 합 또는 사용자 2. 제8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각 호 의 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 자가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의4에 따라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노동조합
	2. 사용자가 제85조제3항에 따

第9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 第96條(過怠料) ①------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 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③ (현행과 같음)